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양돈법률상담코너'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 편집자주 ◆



김태욱 변호사

산재보험에 관한 문의

Q 현재 3,000두 규모로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3~4명 정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아직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농장장이 일을 하다가 발을 심하게 다쳐서 지금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지금 산재보험에 들면 농장주 측에서 과태료를 얼마 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산재보험에 들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즉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난 경우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 사업주는 보험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임져야 합니다(약간의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양돈업 포함)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3~4명이기 때문에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처럼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시 묘지 이전비에 대한 문의

Q 2년전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장 내에 묘지가 8구가 있다고 하여, 이전하는 조건으로 묘지 한 구당 천만원씩 이전비를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입한 농장부지를 측량해 보니,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땅에 묘지가 4구 있고, 나머지는 매도인 땅에 4구가 있어서, 현재 묘지가 있는 한 필지를 아직 명의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땅에 대한 묘지 이전비만 부담하고 명의 변경을 받으려고 하나, 현재 매도인은 자기 땅에 있는 묘지까지 이전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A 사실관계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데요. 계약서를 보고 현장답사를 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의한 내용에만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추측한다면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로는 대상 토지에 4구의 묘지만 있는데 매도인이 허위로 8구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구에 대한 이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고 토지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8구에 대한 이전비용을 지급한다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그 묘지의 위치에 상관없이 인근의 8구의 묘지를 모두 철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계약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상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인큐베이터 사고에 관한 문의

Q 저의 농장에 5월초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서 이유자돈 149두가 질식사 하는 사고가 발생되어, 사진을 찍고 농협 공제에 보상 청구를 했으나 벼락 담보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담당 손해 사정인이 시설 회사에 시설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하라고 해서 전화로 상담했으나 가입하지 않았다고 농가 부주의라고 합니다. 인큐 베이터에는 안전장치로 비상 창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와이어 줄이 도르래 부위에서 변형되어 열리지 않았으며 비상시 위급전화 또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자돈이 죽은 이유가 시설물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확정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시설물 하자로 인하여 이유자돈이 죽었을 경우, 민법 제667조 제1항에 의하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큐베이터 설치 업체 및 전화선 설치 업체에 대하여 시설물 하자로 인한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법 제670조에 의하면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등을 확인하시어 시설물을 설치하신 기간이 1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너도먹고 나도먹는 고품질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하자